

서비스업 야간노동

-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한 제언 -

이 정 희
한국노동연구원

1. 문제제기
2. 야간노동과 법
3.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4.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5.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하여



1. 문제제기

시간 처분권

- 근로계약
 - 시간 처분권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돈을 받는, 수량적 교환
 - 하루 24시간 중 8시간에 대한 처분권이 사용자에게 이양되는 방식
 - “계약의 논리 속에 노동은 계량적 시간으로 축소되는데, 그 시간 동안 근로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포기하고 사용자나 그 이익대표자의 지시에 따를 준비를 한다. 법률은 근로시간의 정의 속에 이러한 사정을 승인한다.”(Supiot, 2016: 408)
- 실근로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분에 놓여져 그 지시에 따르는 시간으로서 개인적 사무에 자유롭게 종사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한다.”
(프랑스 노동법전 L3121-1)
- 자본주의 노동력 거래: 종속관계에서의 시간처분권 정당화

소비사회와 야간노동

- 인간의 노동과 자연의 시간
- 인공조명의 발명, 산업혁명, 그리고 야간노동
 - 19세기 초반부터 공장 24시간 가동 체제 구축. 12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등장(엔겔스(1845)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 야간근로 제한 입법
 - 영국 1831년 공장법: 면직물 공장서 20세 이하 19:30-05:30 노동 금지
 - 국제노동기구ILO 제1호 협약(1919)
공업부문 사업장에서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
- 초연결사회와 야간노동
 - 총동원 사회: 언제, 어디서든

시간의 분배

- 누구나 하루 24시간?
 -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
 - “착취의 부정의에 예속되는 자들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부정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부정의, 시간성 분배의 부정의” (랑시에르 2019, 『모던 타임스: 예술과 정치에서 시간성에 관한 시론』)
 - 시간 종속: 과거-현재-미래 “세 겹의 현재”
 - 상품화된 시간, 불평등 분배, 시간 결핍 발생
- 시간 분할을 둘러싼 비민주성 확장
 - 노동자-사용자 → 노동자-노동자
- 밤과 어둠의 상품화



경계

-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 **VS.** 이기적 욕망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

| 공공서비스형 | 기술적 필요형 | 이윤추구형 |
|-------------------------------------|--------------------------------|-------------------------|
| 야간의 필요성을 위해 누군가는 대기해야 하는 | 설비 가동 멈출 수 없는. 사고 발생시 시민 안녕 위협 | 이윤추구 향한 무한경쟁의 부산물 |
| 군대, 경찰, 병원, 교정, 소방 등 | 통신사 제어실, 발전소 제어실 | 자동차 공장의 교대제, 물류산업 야간노동 |
| → 야간노동 환경 개선, 적절한 교대제, 예산·인력의 확충 필요 | | → 최대한 제한. 경우에 따라 금지할 수도 |

2. 야간노동과 법

근로기준법

제4장 여성과 소년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장 여성과 소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①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별표22

1. 화학적 인자
2. 분진(7종)
3. 물리적 인자(8종)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직접규제의 부재

- 야간노동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취지 규정 없음
 - 임산부·18세 미만: 당사자 동의와 행정관청 인가 받으면 가능
 - 성인 여성근로자: 동의 받으면 가능
 - 성인 남성근로자: 아무런 규정 없음
- 근기법 제56조3항: 임금 규정. 야간근로 규제 규정이라 보기 어려움
- 프랑스 노동법전(Code du travail)
“야간근로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야간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나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한다.”(L. 3122-1)

3. 공공서비스형 야간노동: 간호업종

노동시간 길이와 편성

- 교대근무자별 노동시간

| | 평균 | 최소 | 최대 | 편차 |
|-------------------|------|------|------|-----|
| 2015년 1주 근무시간(단순) | 49.8 | 30.0 | 90.2 | 6.8 |
| 2015년 1일 근무시간 | 10.6 | 9.2 | 12.1 | 0.4 |
| - 주간근무자 1일 근무시간 | 9.7 | 5.6 | 13.3 | 0.7 |
| - 저녁근무자 1일 근무시간 | 9.1 | 6.7 | 11.0 | 3.2 |
| - 밤근무자 1일 근무시간 | 13.1 | 9.7 | 13.3 | 1.6 |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 교대근무 편성

- ‘주간 - 저녁 - 야간’ vs. ‘주간 - 야간 - 저녁’

“수간호사가 번표를 짤 때 나이트 근무자를 짝 정한 다음, 데이와 이브닝 근무자를 중간에 끼워넣어요. 간호사별로 스케줄이 들쭉날쭉하죠. 한 달 치가 미리 결정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번표가 바뀌어요.”

노동시간 길이와 편성(contd.)

- 간호사 근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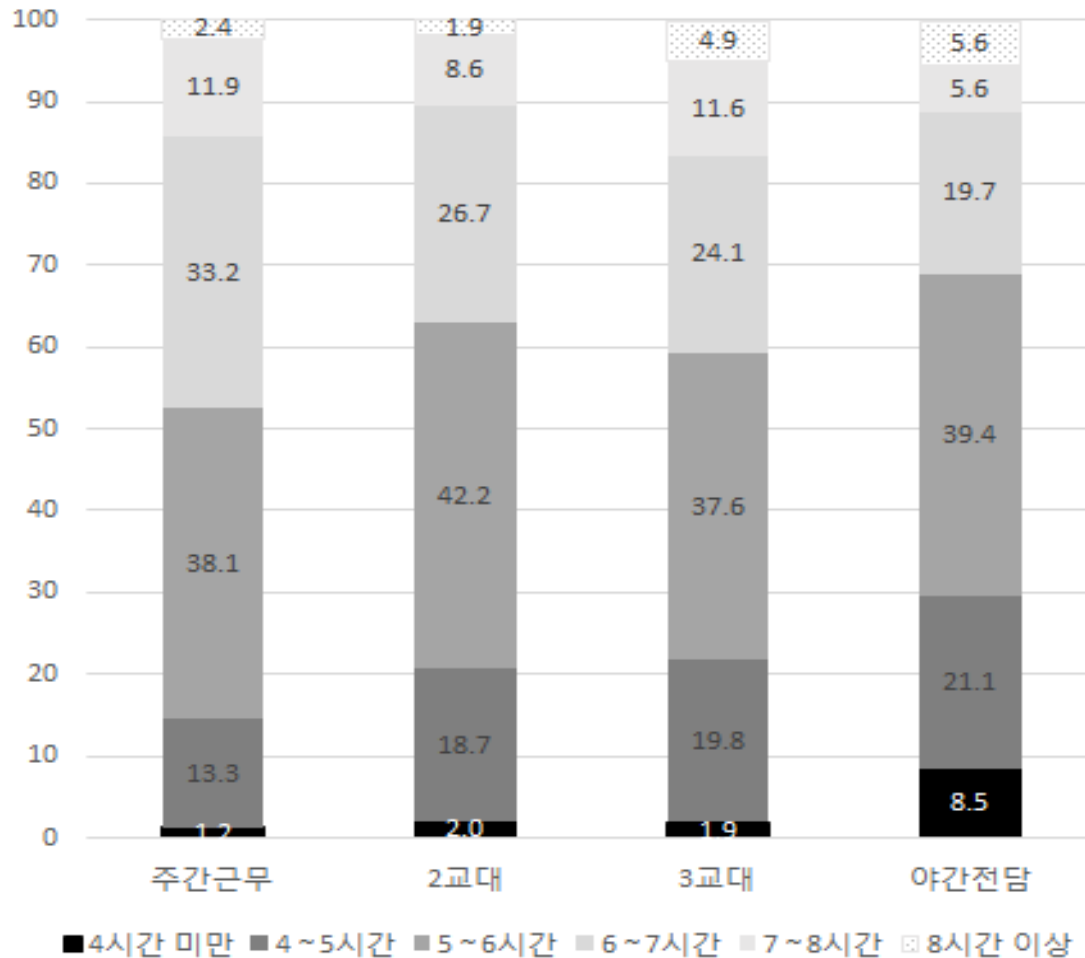
| | | | | | | | | | | | | | | | | | |
|-----------|----|----|----|----|----|----|----|----|----|----|----|----|----|----|----|----|---|
| A 1년 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총근무일수 20일 주간 6일 저녁 6일 야간 6일 일근 2일 |
| | S | OF | E | E | E | S | M2 | E | N | N | N | OF | S | E | E | OF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S | D | D | N | N | N | OF | CD | D | D | M2 | D | S | OF | D | | |
| B 2년 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총근무일수 21일 주간 6일 저녁 8일 야간 6일 일근 1일 |
| | E | N | N | N | OF | S | E | E | E | OF | D | D | D | S | N | N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N | OF | S | M2 | E | E | E | OF | AL | S | D | D | D | S | E | | |
| C 3년 차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총근무일수 19일 주간 4일 저녁 9일 야간 6일 |
| | S | OF | N | N | N | AL | S | D | D | OF | E | E | E | E | S | OF |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
| | N | N | N | AL | S | D | D | E | OF | S | E | E | E | E | OF | | |

주: D=주간조, E=저녁조, N=야간조, OF=휴일, S=주휴, AL=연가, CD=보건휴가, M2=일근(0900-1800)

자료: 이정희 외(2017)

야간노동과 몸

- 간호사 근무형태별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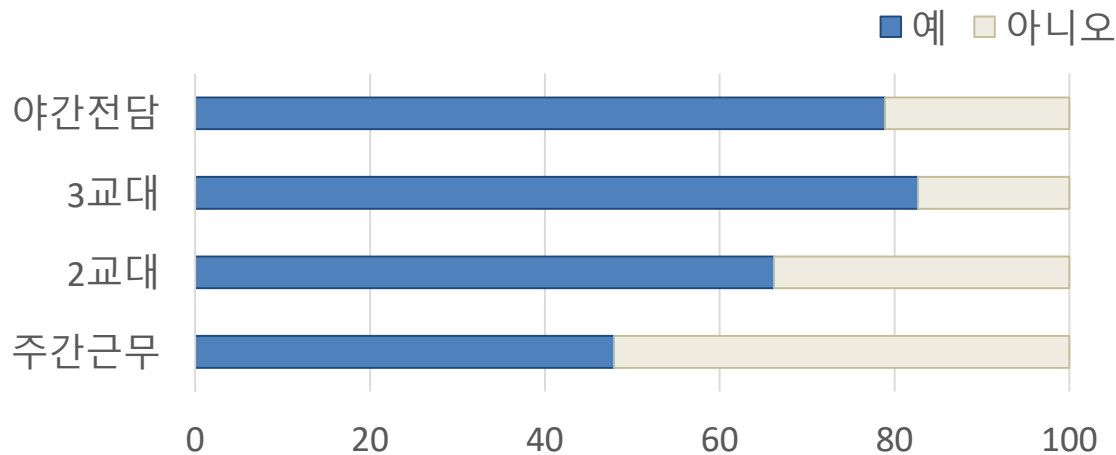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

야간노동과 몸(contd.)

- 1주 단위 자고 일어나도 극도의 피곤함을 경험한 횟수

| | 6~7회 | 4~5회 | 2~3회 | 1회 | 전혀 없음 | 4회 이상 | 2회 이상 |
|------|------|------|------|------|-------|-------|-------|
| 주간근무 | 14.9 | 21.7 | 33.8 | 16.8 | 12.7 | 36.6 | 70.4 |
| 2교대 | 16.5 | 24.1 | 37.7 | 16.3 | 5.4 | 40.6 | 78.3 |
| 3교대 | 22.5 | 30.3 | 31.4 | 11.3 | 4.4 | 52.8 | 84.2 |

- 업무수행 시 위험요인에 수면부족이 포함되는지 여부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

야간노동과 삶

- 일상 생활의 파괴
 - 약속의 파행, 계획 실천의 어려움, 언제나 대기상태
- 3교대 간호사 모성·부성 보호제도 사용 현황

| | 사용했다 | 사용하지 못했다 |
|---|------|----------|
| 임신 중 쉬운 업무로 전환 요구 | 9.3 | 90.7 |
| 임신 중 하루 2시간 노동시간 단축(임신 12주내, 36주 이후 2시간 단축) | 17.5 | 82.5 |
| 유급 태아검진 시간(28주까지 4주 1회, 29~36주 2주 1회, 37주 이후 1주 1회) | 25.5 | 74.5 |
| 유급수유시간(생후 1년 미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 4.9 | 95.1 |
|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육아휴직 대상자, 주 15~30시간) | 10.0 | 90.0 |
| 출산 전·후 휴가(90일, 다태야는 120일) | 65.5 | 34.5 |
| 배우자 출산 휴가(3~5일 사용 가능, 3일은 유급휴가) | 23.2 | 76.8 |
| 난임치료 휴가(연간 3일,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 6.1 | 93.9 |

자료: 보건의료노조, 2019년 조합원 실태조사

야간노동과 단체협약

- 정의 규정
 - 야간노동/야간노동자 별도 정의 규정 없음
- 야간노동 금지 대상
 - 근로기준법 조항과 거의 유사
 - 임신한 자, 산후 6개월/1년 이하자, 50세 이상자 등
- 야간노동 횟수 제한
 - 연속 3일 초과 금지, 야간근무 월 7일 이내 제한 등
- 야간노동자 휴식 및 휴일
 - 연속 3일 밤근무 후 2일의 off 보장
 - 근무종료 후 16시간 이상 휴직 보장 위해 E/D, N/E, N/OFF/D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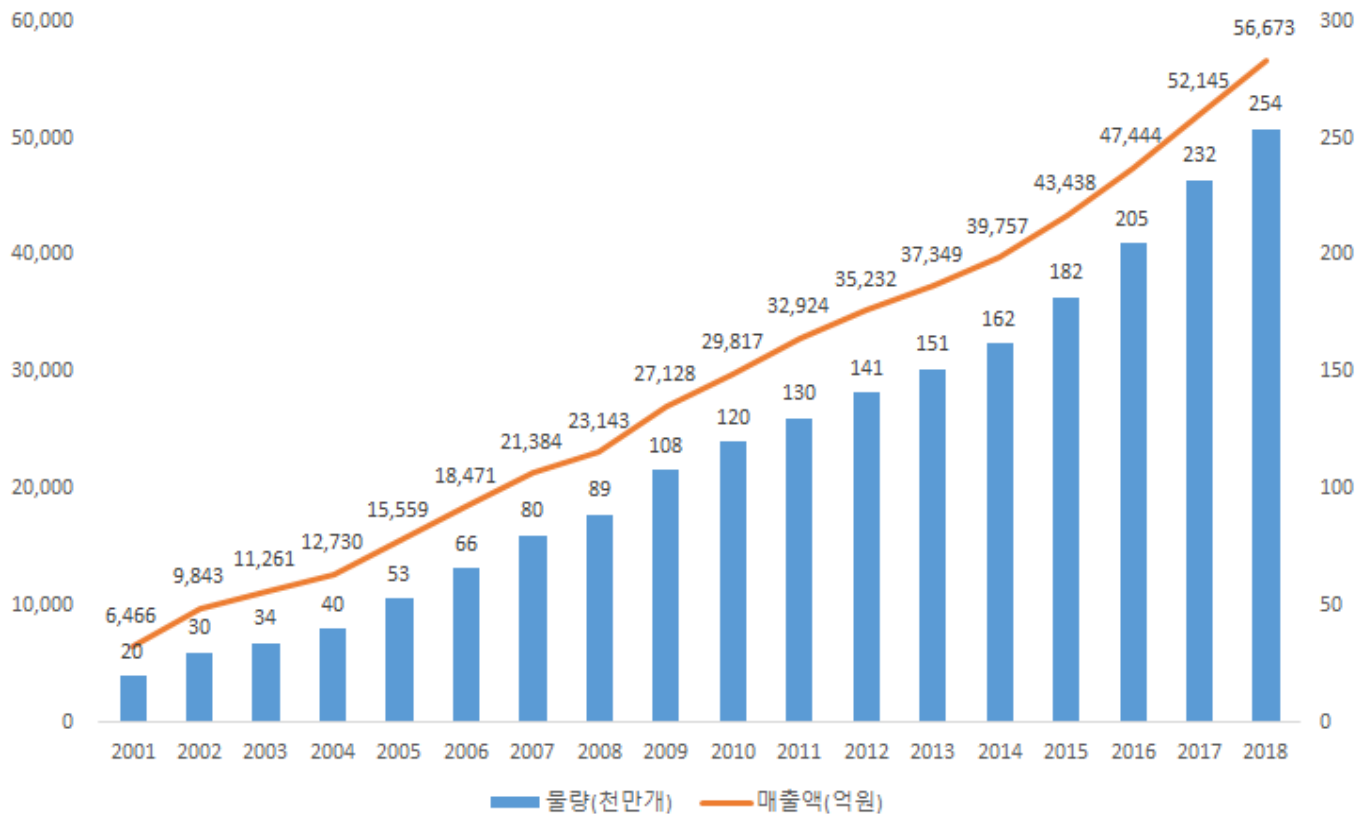
야간노동과 단체협약(contd.)

- 야간노동 수당
 - 통상임금 50% 가산(근로기준법과 같음)
- 적정인력 배치
 - 야간근무 인원 수를 주간조과 저녁조 인원수와 동일하게 운영
 - 야간근무시 1인 근무 금지(최소 2인 이상 배치)
- 특수건강검진
- 야간전담간호사제
 - 본인 지원 원칙, 동일부서 1년 이상 근무자
 - 월 5일 유급휴일 부여
 - 야간근무 2일 이상 연속할 시 48시간 이상 off 보장

4.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택배업종

택배산업 성장

- 택배물량 및 택배산업 매출액 추이(200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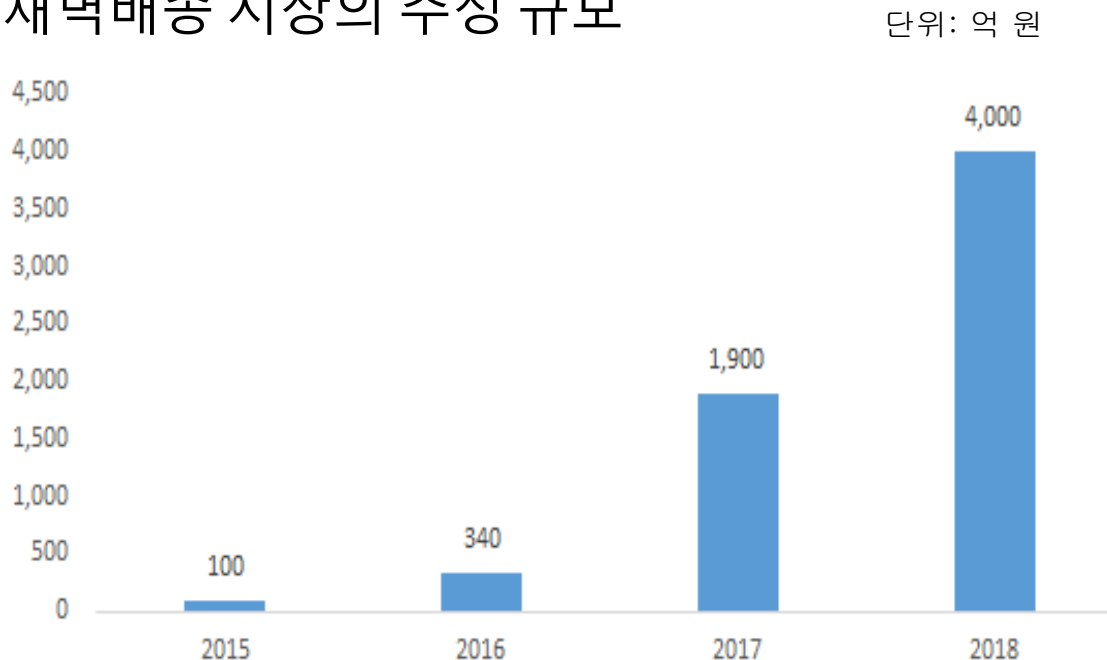



물량 12.7배
매출액 8.8배

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택배산업 변화

- 전자상거래와 택배배송의 융합
 - 상거래유통업체들 자체 배송 시스템 구축: 아마존, 쿠팡, 마켓컬리...
- 신선식품 야간배송
 - 새벽배송 시장의 추정 규모



자료: 농촌진흥청(2018), 빅데이터로 추적한 농산물 소비 구매 실태

야간배송 시장 확대

- 주요 유통사들의 야간 배송 현황

| 업체 | 배송 상품수(개) | 주문 마감시간 | 배송 가능지역 | 배송비(무료조건) |
|-------|--------------|------------|-------------------------------------|------------------------|
| 마켓컬리 | 7,000 | 오후 11시 | 서울, 인천, 경기 | 3,000원(4만원↑) |
| 쿠팡 | 2,600 | 밤 12시 |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울산, 부산, 세종 등 | 월 2,900원 유료회원(로켓와우) |
| 이마트 | 27,000 | 밤 12시 | 서울 강남 일부, 용산, 인천 등 | 3,000원(4만원↑) |
| 헬로네이처 | 3,000 | 밤 12시 | 서울, 인천, 경기 일부 | 2,500원(4만원↑) |
| 롯데슈퍼 | 5,000 | 오후 10시 | 서울, 인천, 광주, 대전, 부산, 대구 등 | 2,500원(4만원↑) |
| GS리테일 | 5,000 | 오후 11시 | 서울, 경기 일부(분당, 일산, 부천) | 3,000원(3만원↑) |
| 더반찬 | 500 | 오후 1시 | 서울, 경기 일부(분당, 일산, 부천) | 2,900원(4.5만원↑) |

자료: 한국경제 2019.3.24.자, “밤에 고른 메뉴가 아침 식탁에… 아마존도 두 손 든 ‘새벽배송’ 1조로 뚝뚝”

쿠팡 배송기사

- 고용형태
 - 쿠팡맨(정규직, 비정규직), 쿠팡 플렉스(coupang flex)
- 쿠팡맨 노동시간 및 임금 구성 (2019년)

| | 노동시간 | 기본급 | 고정형 연장근로수당 | 고정형 야간근로수당 | 월급여액 |
|-----------------|--|------------|---------------|---------------|------------|
| 야간배송 (wave1) | 22시-08시 | 2,494,624원 | 544,580원 | 907,633원 | 3,946,837원 |
| | 연장근무 1시간 야간노동 7시간 휴게시간 1시간(02-03시) | 월 209시간분 | 주 7시간분 | 주 35시간분 | |
| 주간배송 (wave2) | 10시-21시 | 2,494,624원 | 933,565원 | - | 3,428,189원 |
| | 연장근무 2시간 휴게시간 1시간(12-13시) | 월 209시간분 | 주 12시간분 | | |

- 급여공제 동의서: 과태료,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 원천공제

쿠팡 배송기사(contd.)

- 야간배송기사 사례
 - “아침 8시에 퇴근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벽에 휴식시간 주고서 한 시간 쉬라고 하지만 배송물량 처리하려면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계대가 어두운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야간근무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후레쉬 하나여서 핸드폰 후레쉬를 밝히고서 일하다가 사소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 “잠을 제대로 못 자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가족 모임 등을 일절 할 수가 없어요. 기존 쿠팡맨들이 야간배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니까 신입 쿠팡맨들을 야간배송에 투입하고, 신입들이 늦게 물량을 처리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물량이 늘어나고....”

마켓컬리 배송기사

- 고용형태임금노동자(100여명) + 개인사업자(500여명)
- 야간배송직 (계약직) 노동시간 및 임금 구성

| 노동시간 | 기본급 | 중식대 | 야간근로수당 | 월급여액 | 별도 |
|------------------------------------|-----------|---------|--------------------|-----------|--|
| 22시-07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노동 7시간 | 1,745,150 | 100,000 | 670,523 (7시간 분) | 2,515,673 | 업무실적 성과급(월 20만-50만원) 상여금 분기별 20만 킬리포인트 생일에 20만 킬리포인트 |

- 하루: 07시 퇴근 - 08시 취침 - 휴식 - 21시 출근 준비 - 22시까지 출근
- 교대제(shift) 아닌 고정(fix) 야간노동
 - 건강 악화된 노동자 퇴사(exit): '건강한 노동자 효과'

5. 인간중심 분업구조를 위하여

야간노동 확산 원인

- 시간의 결핍
 -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적 재화 vs. 상품으로서의 지위
 - 상품화된 시간의 불평등한 분배
 - 워라밸, 접속차단권, 시간주권 등 시간 결핍 대응 위한 제도적 방책
- 경계의 설정
 - 결핍된 어둠(밤)에 대한 욕망 vs. 인공조명 없는 삶의 불편함
 - “삶을 위한 꼭 필요한 것과 이기적인 욕망 충족 위해 필요한 것 사이의 경계는 어디인가?”
 - 공공서비스형 vs. 이윤추구형 야간노동

야간노동 예외적 허용 원칙

- 야간노동 남용 방지 원칙
 - 현행법: 야간노동 길이 규제 없음. 다만 가산임금 지급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
 - 프랑스 노동법전 참조
- 직접규제의 필요성
 - 가산임금제의 두 얼굴: 초과근로 억제 vs. 저임금 장시간 노동
 - 야간노동시간 그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 필요
- 야간노동과 야간영업 규제

임금 보상 넘어 시간 보상으로

- 가산임금제
 - 저임금과 맞물려 야간노동 조장하는 역기능 가능성
 - 가산임금 아닌 보상휴가로 지급할 필요
- 보상휴가 의무화
 - 근기법 제57조 개정 검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산임금을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의무'로 강화하는 방안
 - 프랑스 노동법전 (L. 3122-8): 야간노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여기에 더하여 단체협약 등을 통해 가산임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 시간을 둘러싼 쟁의(爭議)
 - 종속 안에서의 보호/노동 밖에서의 자유
vs. 종속으로부터의 자유/노동 안에서의 자유

야간노동 규정 별도 장/절로 정리

- 빈약한 현행 법
 - 야간노동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 취약함 반증
 - 근로기준법 3개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의 장/절로 정리
 - 야간노동 규제(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보상휴가 의무화
 - 연속적인 야간노동 제한
 - 월 단위 야간노동 횟수 제한
 - 야간노동자에 대한 휴식 및 휴일 부여
 - 야간노동시 적정 인력 배치 의무
 - 1인 야간근무 금지 등

야간노동 규정 별도 장/절로 정리(con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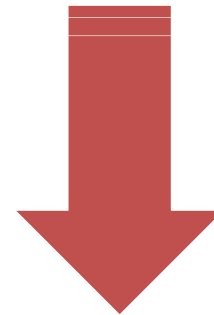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2019.10)

| 항목 | 내용 |
|------------|--|
| 야간근무시간 | 야간근무시간은 8시간 근무 원칙 |
| 월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
|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
| 연속 야간근무 일수 |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 |
| 야간업무량 조절 | 야간업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야간근무 시 업무량 조절 (채혈, 상처소독, 의사의 오더 시간 등을 야간근무 이외의 시간으로 조정) |
| 교육 및 훈련 | 근무 종료 시각에 이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배려 |
| 근무 외 행사 참여 | 근무 외 행사 참여 최소화 |
| 건강권 보호 |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연 1회) |
| 로테이션 | 야간전담간호사의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 선택권 보장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전담 근무의 연속기간은 3개월 이하로 제한 개인 동의를 전제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여부 결정 |

기업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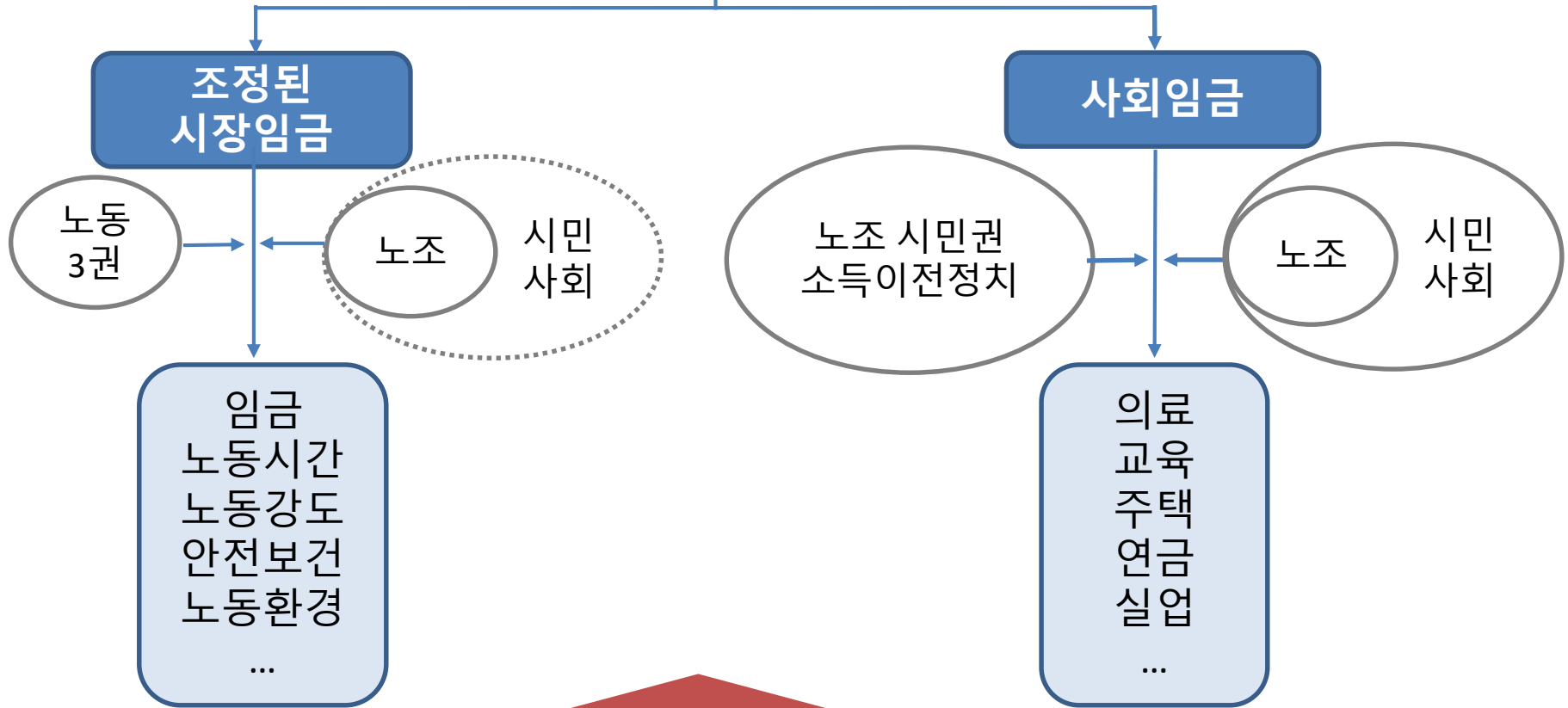
- 야간노동 위험성 관련 사업주의 정보제공 의무 부여
 - 국제암연구소(IARC) 야간노동 '2급 발암물질'로 규정
 -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자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제공
-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 소비행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이익과 편리 →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 영향 → 사회적 비용 증대
 - 기업 이윤추구 + 소비자 편익추구 결합의 효과 공론화 필요
- 환경미화원 주간근무로의 전환 사례

| 지자체명 | 기존 | 개선 |
|------|-------------|-------------|
| 정선군 | 05:00~14:00 | 09:00~18:00 |
| 의왕시 | 02:00~10:00 | 06:00~15:00 |
| 정읍시 | 02:00~07:00 | 05:00~11:00 |



**산재사고율
43% 감소**

정의와 연대를 위하여



전국단위 사회적 대화
산업·업종 단체교섭 및 사회적 대화
기업단위 보충협약, 경영참가

질문 및 토론